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정책보험입니다.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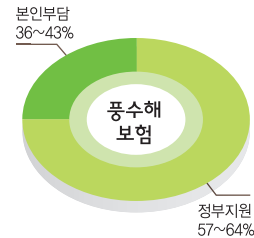


보험 특징

-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7~64% 를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
- 다양한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 인한 피해의 손해 보상
- 보험가입자 선택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며 실제 복구비에 준하는 보상

상품 안내

- 대상시설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 보험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 납입방법 : 일시납원칙 [연간 자기부담보험료 30만원 이상 시, 2회납(1회 70%, 2회 30%) 12회 균등분납 가능]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가입문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판매보험사 지점(설계사)



주택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으로
재산과 행복을 지키십시오.

● 주택 (단독 · 공동주택) ●

가입 대상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제외물건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 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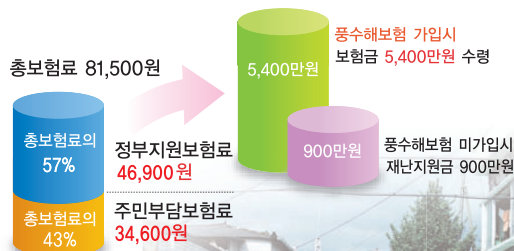
상품 종류

- 주택 I : 주택(동산 포함)에 대한 정액보상형 보험상품
으로 개별가입과 단체가입이 가능
- 주택 II : 주택(동산)의 정액보상형 보험 상품에 한해 정해진
기간내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하면 주민
부담 보험료의 1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상품
- 주택 III : 주택 중 공동주택(동산제외)에 한해 실손보상형
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가입 예시

■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예시 (지급보험금 : 전파시)

※ 기준 : 주택 I, 복구비기준액 90% 보상형, 가입면적 100㎡, 경기 이천



■ 보험금 지급 사례

2006년 7월 태풍 위니아매 경북 예천군 신○○씨,
본인부담보험료 9,800원을 내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여 주택 전파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 보험료 및 보험금은 지역별 보험료율, 시설물의 종류, 가입면적, 단가 및 보험가입비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 주택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보상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상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상형
전파	50㎡ 이하	1,500만원	2,100만원	2,700만원
	50㎡ 초과	주택면적(㎡)X50% X 60만원	주택면적(㎡)X70% X 60만원	주택면적(㎡)X90% X 60만원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침수	50㎡ 이하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50㎡ 초과	90만원 + {6천원 X 주택면적(㎡)}	80만원 + {1만2천원 X 주택면적(㎡)}	70만원 + {1만8천원 X 주택면적(㎡)}

■ 선택특약

구 분	보상금액
동산담보특약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되고,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하되, 침수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 - 침수 높이 30cm 이하 : 침수보험금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 반파보험금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전파보험금
소파부담보특약	기본담보의 소파손해를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11.24% 할인 받을 수 있음

※ 주택 침수확장특약 선택가입시, 주택약 침수보험금의 2배 지급.



온실

전세계적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가입대상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 제외물건
 - 100㎡ 미만의 온실
 -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것
 -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 농·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

상품내용



주계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상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상형
전 파	기준단가 X 70% X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X 90% X 총피해면적
반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소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가입예시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예시 (지급보험금 : 전파시)

※ 기준 : 철재파이프하우스 A형, 복구비기준액 90% 보상형,
가입면적 500㎡, 경기 이천



보험금 지급 사례

전남 나주시 이○○씨는 2007년 7월에
온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고 2007년 9월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
1억 1,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보험료 및 보험금은 지역별 보험료를, 시설물의 종류, 가입면적, 단가 및 보험가입비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특약

구 분	보상금액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특약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 (11월~3월) 중 선택할 수 있음

풍수해보험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시고 서명관에도 보험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세(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은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등 보험약관에 정한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 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 (02)3145-7339

인터넷 : <http://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입하신 보험회사 대표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72, www.kca.go.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TEL : 1588-3311,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

▶ 해약환급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단기로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장은 풍수해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특별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여 읽어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모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냅시다.

